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6. 9. 9.
행정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. 8. 21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6. 8. 24.

다. 상정일자: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(2026. 9. 9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지역경제과장 정명옥】

가. 제안이유

-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마포사랑상품권 잔액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상품권 관련 용어 정의 명시(안 제2조)
- 소멸시효 완성 상품권의 처리방안 신설(안 제5조의3)
-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(안 제6조 및 제7조)

- 기타 중복표현 약칭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
- 별지 서식 정비

다. 참고사항

-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)
- ‘서울사랑상품권 조례 개정 협조 요청’ 서울시 공문
[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-5369(2026. 4. 24.)호]
- 입법예고 : 2026. 7. 16. ~ 2026. 8. 5. (제출된 의견 없음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① 조례의 개정 취지

-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경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마포사랑상품권 잔액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하는 것임.

② 주요 개정내용

- 안 제2조에서는 마포사랑상품권, 판매대행점, 가맹점, 사용자 및 할인보전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.
- 안 제5조에서는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품권 유통지역을 마포구 일원으로 명확히 함.
- 안 제5조의2에서는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마포구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5조의3에서는 상품권의 소멸시효를 구매일부터 5년으로 하고, 소멸시효 완성 후 본인부담금의 환급과 할인보전금의 세외수입 귀속 등에 관한 처리절차를 신설함.

- 안 제6조에서는 판매대행점을 통한 가맹점 등록 절차를 보완하고,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을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으로 명확히 함.
-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상품권 활성화 정책, 잔액 환급 및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.

③ 법적 타당성 검토

- 현행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발행일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상품권 발행·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.
- 특히 개정안에서 신설하는 상품권·판매대행점·가맹점 등의 정의는 상위법의 정의 체계를 반영하고 있으며, 상품권 유통지역을 마포구 일원으로 정한 것도 상위법상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을 발행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행정구역으로 하는 원칙과 부합함.
- 따라서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와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상품권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.

④ 개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

- 본 개정을 통해 마포사랑상품권의 발행·유통·가맹점 관리 및 자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.
- 특히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미사용 잔액의 처리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재정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, 사용자의 본인부

담금 환급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이용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- 또한 가맹점 등록과 관리기준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조례간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의 혼선을 줄이고 상품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나아가 마포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유통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⑤ 검토 및 유의사항

- 안 제5조의3의 소멸시효 및 잔액 처리 규정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.
- 상위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발행일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, 개정안은 소멸시효를 구매일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, '유효기간'과 '소멸시효'의 법적 성격 및 기산점을 구분하여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.
-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이용자 계좌로 자동 환급하고, 일정 기간 환급신청이 없을 경우 이를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시키는 규정은 이용자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되므로 상위법상 근거, 민법상 소멸시효 및 부당이득 관계, 전자금융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⑥ 종합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마포사랑상품권의 정의, 자금관리, 가맹점 등록 및 상품권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은 대체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.

- 특히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미사용 잔액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, 상품권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안정적인 상품권 운영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지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안 제5조의3에서 상품권 소멸시효를 ‘구매일부터 5년’으로 규정한 부분은 상위법의 ‘발행일부터 5년’인 유효기간과의 관계를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, 소멸시효 완성 후 본인부담금을 세외수입으로 귀속시키는 부분 역시 이용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만큼 법적 근거와 환급절차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

[별표 1] 관계 법령

「상법」

[시행 2026. 9. 10.] [법률 제21044호, 2025. 9. 9., 일부개정]

제64조(상사시효)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.

「민법」

[시행 2026. 3. 17.] [법률 제21454호, 2026. 3. 17., 일부개정]

제184조(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)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.
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,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.

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6. 2. 27.] [법률 제21030호, 2025. 8. 26., 일부개정]

제4조(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, 권면금액,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4조의2(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,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·판매·환전하기 위한 자금(이하 "상품권운영자금"이라 한다)을 보관·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자본시장

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「지방재정법」

[시행 2026. 7. 1.] [법률 제21328호, 2026. 2. 5., 일부개정]

제34조(예산총계주의의 원칙)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.

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·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.

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

[시행 2026. 1. 2.] [대통령령 제35948호, 2025. 12. 30., 타법개정]

제40조(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) ① 법 제34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”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

1. 공공시설 손실부담

2. 계약보증·입찰보증·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

3.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

4.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

② 제1항 각 호의 경비는 세입·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,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

[시행 2026. 6. 2.] [대통령령 제36369호, 2026. 6. 2., 일부개정]

제51조(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고보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·세출 외 현금·유가증권은 세입·세출외현금·유가증권 출납원이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, 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이 따로 지정된 경우를

제외하고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취급하게 하며, 제1항에 따라 금고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「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」

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3호, 2025.9.11. 개정

제8조(소멸시효)

①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,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. 다만, 발행자 등이 자발적으로 신유형 상품권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「서울페이+서비스 이용 약관」

제11조(유효기간)

① '상품권' 구매금액의 유효기간은 '상품권'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합니다. 단, '시'는 조례에 따라 사용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. '정책수당'의 유효기간은 '시'의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, 지급시점부터 기산합니다.

④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고객은 '상품권'의 미사용 잔액에 대한 환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'판매대행사'는 고객이 구매한 상품권의 금액에서 할인보전금의 비율에 따라 남은 잔액을 계산한 후 고객에게 환불합니다.

제12조(소멸 시효)

① '상품권'을 구매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'판매대행사'에 물품 등의 제공, 환불 및 잔액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. 다만 '판매대행사'가 자발적으로 '상품권'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